

1.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귀 기관의 분석 결과와 근거를 질의합니다.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분석, 즉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혹은 반론을 질의합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정책사업 추진, 시설투자 확대, 서민생활 안정, 저축은행 지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증가되어 왔으며 지난해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할 경우
- 최근 5년간 주요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167.3조원)의 대부분(78.5%)은 아래의 10개 사업에서 발생(131.4조원)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1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19.4조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2조원)
-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15.0조원), 신도시·택지사업(14.3조), 주택임대사업(13.9조원)
-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3조원)
-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9.5조)
-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6조원)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살리기사업(7.1조)

※ 출처 :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조세재정연구원, '13.12)

- 또한,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발생 원인별로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7개 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 LH, 한전, 가스, 철도, 수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 향후 구분회계 제도가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정보가 산출되면 부채증가의 원인과 내역이 더욱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공공기관의 자구책 중심의 정상화대책의 타당성에 대해 귀 기관에 질의합니다. 더불어 정상화 대책의 방안과 관련해서 자산매각, 원가절감, 민자유치 및 금융기법 활용 등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부채감축 방안 각각의 타당성에 대해 부채증가 원인과 결부해 귀 기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답변에 정상화 대책으로 언급한 방안인 자산매각, 원가절감, 민자유치, 금융기법 활용 방안 각각의 총 목표치와 연도별 목표치를 포함해 주십시오.

- 지난 1.29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부채감축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 **2월중**,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정상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구노력의 충분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점검·보완한 결과,
- **한전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므로 **현 계획대로 추진하고**
- *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 석유, 광물, 도로, 예보, 장학재단
-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하여,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부채감축계획에 의하면 18개 기관은 **사업조정** 21.7조원(51.7%), **자산매각** 8.7조원(20.8%), **경영효율화** 5.9조원(14.0%)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구노력 유형별 부채감축규모 >

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기 타
42조 170억원 (100.0%)	21조 7,037억원 (51.7%)	8조 7,352억원 (20.8%)	5조 8,700억원 (14.0%)	5조 7,081억원 (13.6%)

- ① 먼저 사업 조정은 비핵심 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 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LH)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구조 설계(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행 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 등, (수공) 단지사업 일부 유보, 풍력발전 축소 등 (도공) 건설사업 투자규모 조정 등

- ② 자산 매각은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출자지분, 회원권·연수원 등 복지시설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 국내자산 유형별 매각대상 >

부동산 6.0조원*	출자지분 3.1조원*	직원복지시설 111억원*
(수도권 본사부지 매각) 한전, LH, 도로, 가스, 광물, 석유 (철도) 용산부지, 성북역 부지 (한전) 열병합부지 등	(도공) 민자도로 지분 (한전) 한전 KPS, 한전기술, LG U+	(콘도회원권) 한전, 가스, 중부 (골프회원권) 도공 (연수원) 가스 (사택) LH, 수공, 한수원, 발전사

* 매각금액에는 중장기계획상 자산매각계획 포함

- 또한, 해외사업은 비핵심사업 중심으로 축소하되 리스크분산과 투자비조달 등을 위해 일부지분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 (한전) 유연탄, 우라늄 광산 지분 매각 등, (석유) 해외광구내 일부 비핵심자산 매각 등, (가스) 해외 자회사 지분 일부 매각 등

- ③ 경영효율화는 모든 기관이 인건비,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팀장급 이상의 '14년 인건비 인상분을 동결하고, '13년 상여금 반납과 더불어 경상경비도 약△20% 규모 절감하였습니다.

3. 부채감축의 방안인 민자유치, 자산매각 등이 공공기관 민영화 단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 부채감축계획으로 일부기관이 사업조정방식의 일환으로 제시한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 LH 등이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계획은 통상적으로 사업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하는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경영권을 이관하는 민영화*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민영화: 「공기업의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상 민영화란 “소유권의 완전 이전”을 의미

- 한편, 가스공사가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사업조정계획도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자산매각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공공 서비스 제공기능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동 방침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지난 '1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와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상태 관리실태」에서 감사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과 이행실태를 질의합니다.

- ☐ 감사원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등에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 주요 지적사항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부채 발생 원인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 ☐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은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감사원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

지적 사항	조치 현황
-------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관련

① 사업계획·재무전망의 근거 누락	· '13~'17년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명확히 포함되도록 '13~'17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반영('13.5)
② 경영목표와 괴리된 재무관리계획 수립	· 경영목표와 재무관리계획 내용이 일치 되도록 '13~'17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반영('13.5)
③ 완전자본잠식인 석탄공사를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	· 작성 대상 확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10) *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 자본잠식+정부순실보전기관
④ 유가 등 재무전망의 가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요구	· '13~'17년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특정 변수에 민감한 기관은 기관 자체 추정 변수를 적용토록 작성지침에 반영('13.5)

◇ 공기업 부채관리 관련

① 공기업 부채 총량 관리 필요	· '13~'17년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17년 목표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관리하기 위한 부채총량관리 제도 도입('13.9)
② 공기업 부채의 발생 원인별 관리 필요	· 사업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구분 회계제도 도입('13.12)

5. ①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등 16개 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는데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영 지침」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경영·인사권 침해로 단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내용과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②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부당함과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 대책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불온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 지침의 세부내용중 이러한 법적쟁점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과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와 관련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및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되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 동법에 규정된 금지사항 등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공정한 노사관계 및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경영·인사권 침해로 단정’ 한다는 질의와 관련하여

- 경영·인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경영상 의사결정’ 및 ‘인사결정권’은 사용자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영지침의 내용은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관련 법령에 규정된 노사협의 사항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